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공조

- 보건관리자가 알아두어야 할 산업안전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부 정 현 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현장에서 관리와 기술측면에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현장의 위험한 기계설비와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점검한다면 보건관리자는 그 밖의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같고 이를 위해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안전관리자는 기계설비만을,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만 보면서 자신에게 부여받은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놓치고 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는 기계관리자이고 보건관리자는 건강관리자에 불과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진장치의 볼트가 탈락하여 작업장내에 분진이 비산할 때 안전관리자는 볼트가 탈락된 것만을, 보건관리자는 분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만을 체크한다. 만일 이러한 현장에 어느 한쪽이 없다면 서로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안전관리자는 볼트의 탈락뿐 아니라 작업환경 그리고 작업자의 건강에 대한 유

해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분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뿐 아니라 분진비산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업무상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실시 등 안전보건 전반에 걸쳐 조연 및 협의를 필요로 한다.

현장의 보건관리자 중에는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관리를 업무의 전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안전과 보건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안전보전이 산업현장에서 대우받고 발전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반드시 다양한 업무공조를 통한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그럼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업무공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기본틀이 된다. 그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및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연이 반드시 필

요한 내용이다. 현장에 따라 작업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규정의 내용과 작성에 대해서 안전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소속되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숙지하고 안전관리자와 업무협조를 해야한다. 특히 보건관리 위탁사업장의 경우 운영규정의 작성시 보건관리자에게 업무협조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장에 작업자의 배치시 적정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적정근로자의 배치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심리상태(성격 등)에 관해서 파악하고 안전관리자와 더불어 작업자 적정배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부서에서 안전관리자만의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안전과 보건의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보건관리자와 협의해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내용과 작성방법을 알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안전교육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안전보건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주가 되어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장관리의 절반은 작업환경과 건강관리라는 보건분야이다. 안전보건교육은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함께 하는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시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교육의 법적요구사항(교육대상과 교육내용·시간)을 숙지하고 안전관리자와 업무공조를 해야한다.

여섯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라는 표현이 있다. 유해라는 표현은 보건업무에 해당된다. 일부 보건관리자는 기계·기구의 검사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 기계기구의 성능저하와 안전장치부실은 안전사고의 위험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을 저하하는 유해요소가 동반된다. 보건관리자도 현장의 작업환경 체크시 검사대상 기계설비명과 검사주기 등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자와 공조하여야 한다.

일곱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와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사고예방에 노력해야만 하지만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와 사고조사에 관한 행정업무에 관해서도 전문가여야 한다. 사고발생현장에는 안전과 함께 사전·사후에 보건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업무에 관한 업무를 숙지하고 안전관리자와 공조해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위탁관리사업장의 경우 안전사고와 관련한 행정적인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보건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산업재해보상처리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여덟째,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상호의 업무를 알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조라는 것은 서로를 알고 이해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법적인 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시

행령 제13조)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요시 되고 있는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은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시 안전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할 항목이다.

① 작업환경개선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산성 감소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에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유해인자를 제거해야 하므로 1차적으로 보건관리자는 유해인자의 위험성을 사업주에 알리고, 환경개선 시설물을 설치할 때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유해성 제거 및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근골격계질환예방은 불합리한 작업방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작업방법의 개선이 대두되므로 단순히 작업환경 및 조건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기계설비의 배치, 작업방법의 적정성, 기계설비의 유해위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공정에 인간공학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해당 기계설비의 복합적인 위험성과 다양한 안전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과 같다. 즉 근골격계질환이라는 보건의 업무와 함께 반드시 기계설비안전이라는 안전의 개념이 동반되어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보건과 함께 안전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동화 및 작업표준을 제정토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보건과 안전을 “산업안전”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인식되면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선입관을 Safety에만 국한한 경향이 있어왔다. 하지만 산업안전의 절반은 보건이고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많은 보건관리자들의 노력이 있어 현재와 같이 산업안전의 위상이 높아졌고,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국내 경기침체로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 산업안전의 위상을 높이고 보건관리와 안전관리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업무공조가 요구된다.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여 산업안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의 업무에 지도·조언 등 협조한다면 산업현장에서 두 분야는 함께 발전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